

데이터 3법의 개정에 따른 프라이버시 거버넌스의 변화와 나아갈 방향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

임용¹, 정종구²

<목 차>

- I. 새로운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체제의 개막
- I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체제의 변혁에 따른 개보위의 과제
 1. 프라이버시 수권에 대한 (재)조명
 2. 개보위의 거버넌스 체제 내 역할과 집행시스템의 변화
 - (1) 현행 개보법 하에서의 역할과 한계
 - (2) 집행시스템의 변화
 - (가) 조직 측면: 개보위의 독립성 및 중립성의 강화
 - (나) 권한 측면: 개인정보 보호 일반에 대한 조사·처분 권한으로의 확대
 3.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를 맞이한 개보위에 대한 제언
 - (1) 프라이버시에 대한 핵심 수권(mandate) 기관으로서의 선도와 주창 기능
 - (2) '신생' 집행기관으로서의 신뢰 구축(trust building)
 - (3) 초기의 선택과 집종의 중요성
- III. 결론

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부교수;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공동 디렉터,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기획이사

²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 연구원

I. 새로운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체제의 개막

디지털 시대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오늘날, 데이터가 경제의 혈류로 일컬어질 만큼 시장과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 데이터,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 주체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진 상황이다. 그 결과 정보 주체들의 프라이버시를 적절하게 보호하면서 개인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묘책을 찾아내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 1. 9.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보법’이라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그리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이하 통칭하여 ‘데이터 3법’이라 함)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 법률들은 2020. 2. 4. 공포되어 오는 2020. 8. 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데이터 3법의 개정이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프라이버시 관련 거버넌스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데이터의 이용과 보호에 관련된 집행 권한 및 조직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라 함)로 집중하는 것이다.

개보위는 2011년 개보법이 제정되면서 함께 출범하였다. 그 동안 개보위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왔고, 위법 행위 감시 및 국민의 권리 구제, 법령해석 등에 관한 심의와 의결, 정책연구 및 국제협력 등의 활동을 했다.³ 이 와중에 (굳이) 개보위의 지위와 권한을 본질적으로 변혁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프라이버시 집행시스템의 변화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

³ 개보위 홈페이지 중 위원회 소개 부분 참조.

기 위해서다.

아래에서는 개정법의 관점에서 개보위의 수권(mandate)에 대해 먼저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의 개보위의 변화한 권한 등에 대해 정리해 본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 개보위가 프라이버시(privacy)에 관한 핵심 수권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고려해 보면 좋을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⁴

I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체제의 변혁에 따른 개보위의 과제

1. 프라이버시 수권(mandate)에 대한 (재)조명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현행 개보법 제7조 제1항)⁵. 개보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현행 개보법 제1조).

그런데 오늘날의 데이터 주도 경제 하에서 개인의 자아 실현과 존엄의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만큼이나 개인의 디지털 경제에의 참여

⁴ 개보위와 유사한 수권을 받아 집행을 해 온 국내외의 타 규제기관이 어떻게 정책적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 권한을 행사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개보위가 집행 권한과 조직을 어떻게 운용해야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회의 요구에 걸맞게 지위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⁵ 개정법 또한 개보위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

와 가치 창출을 가능케 하는 정보의 활용이 중요해졌다. 이제 디지털 시대의 정보 주체들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해 창출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가치 창출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이 창출된 가치의 향유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는 불가침의 영역을 통해 인간이 누리는 안정과 효익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의 측면 외에도 정보 주체가 데이터의 가치 사슬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효익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는 도구(tool; leverage)로서의 측면이 더해졌다고 할 수 있다.⁶ 그리고 개별 정보 주체마다 그 도구를 언제 어느 수준에서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선호는 다양하다.

이처럼 개보법의 목적인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보장과 관련된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유동적이고(evolving), 관련 이해관계와 고려가 다면적인(multi-dimensional)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선호 또한 다양하다(heterogeneous).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 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리이자 도구인)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이러한 유동성, 다면성 및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곧 개보위의 존립 이유와 정책적 수권(mandate)과 직결된다. 개보위가 보호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대상, 내용 및 수준은 기술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갈 것이므로 개보위도 지속적인 분석, 시도 및 성찰을 통해 변모하는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포착해내야 한다(유동성에 대처). 또한 프라이버시의 요구도 정보 주체의 주관적인 선호에 따라 다른 수준이나 양상으로 파악되고 존중되어야 하므로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다양성에 대처).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는 문제되는 상황(context), 관련 산업, 규제 및 정책에 따라 서로 다른 쟁점과 트레이드오프

⁶ 개보법의 입법목적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첫 번째 측면은 “안전”, 두 번째 측면은 “활용”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trade-off)를 야기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다면성에 대처).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개정된 데이터 3법의 요구, 즉 개보위의 존립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어려운 과제의 해결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

2. 개보위의 거버넌스 체제 내 역할과 집행시스템의 변화

(1) 현행 개보법 하에서의 역할과 한계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위원회로 2011년 발족되었다.⁷ 하지만 종래에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분산되어 있었고, 동일한 대상을 두고 다수의 중복적이고 유사한 조항들이 관련 법령에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법령에 따라 개보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구도 분산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의 중앙행정기관 외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소비자원 등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일관되면서도 실효적인 감독과 법 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⁸

⁷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며,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을 수립할 때에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평가한다. 또 민간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정책조사연구와 국제협력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⁸ 개보법(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의 개정이유 참조(“...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음”); 김연균, 개보위 독립기구 격상...덩치 큰 종이 호랑이 될까(2018. 10. 29.); 이인호·유충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발전방안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80면; 이은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3(1), 2012, 217면. 현행(개정 전) 법제 하에서 개보위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최상위 감독기관이라고 보기에겐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위 개보법 개정이유에서도

특히 현행 개보법상 개보위는 심의·의결권만 있고, 대부분의 집행·감독 권한은 행정안전부에게 부여되어 있다.⁹ 개보위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현행 개보법 제7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개보위가 독립된 기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¹⁰ 개보위는 심의·의결 기능만 담당하고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 개인정보 수집자 감독, 개인정보 침해 구제 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맡고 있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다. 우리나라가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받고자 시도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 기구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려된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¹¹

감독기구의 독립성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법과 같이 다수의 감독기구가 존재하고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의 역할 분담이 불분명하면, 효과적인 법 집행도 어렵고 체계적인 노하우의 축적이 더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전문

주요 개정 내용으로 개보위의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한 것을 들고 있다.

⁹ 엄밀히 따지면 개보위가 감독 및 조사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고는 있으나, 이는 관련 행정집행의 심의의결을 통한 승인 또는 행정안전부와의 집행 요구 등의 형태를 띄고 있어 행정권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박주희,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 관한 공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2020, 37면)

¹⁰ 국가인권위원회, 제2기(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2012), 128면.

¹¹ 최연진, ‘데이터 3법’ 이대로는 GDPR 적정성 심사 통과 어려워, 한국일보(2019. 11. 13.); 금준경, 방통위 밀어붙인 개인정보 평가, EU에서 퇴짜, 미디어오늘(2018. 11. 2.). 현행 개보위는 작용법상 심의·의결의 역할에만 그치고 실질적인 집행과 처분, 조사의 권한을 갖지 않아, 외형은 대통령 소속의 독립행정기관을 갖추었지만 기능·역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독립행정기관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견해도 있다(박주희, 앞의 논문, 26면)

성을 갖추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¹² 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기회가 없는 기관에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적절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결과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현행 개보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그 권한이 제대로 존중 받지 못했다고 평가되기도 했다. 일례로 2014년 신용정보 유출사태 이후 개보위는 금융위원회에게 금융지주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계열사간에 공유함에 있어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¹³ 금융위원회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개보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이면 사전 동의 없이 고객정보 공유 허용).

(2) 집행시스템의 변화

개정된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개보위는 (i) 조직과 (ii) 권한의 두 측면 모두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가) 조직 측면: 개보위의 독립성 및 중립성의 강화

개정법 하에서 개보위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위가 격상된다(개정 개보법 제7조).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보위는 앞으로 예산안편성권과 직원인사권을 독자적으로

¹² 지능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한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에서 주최측인 개보위가 전문성이 없다는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황정빈, “개보위 전문성 없다” 질타 쏟아져, ZDNet Korea(2018. 12. 1.)).

¹³ 개보위,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 이용 제도 개선 필요, 보도자료(2014. 1. 14.).

행사할 수 있게 된다(개정 전후의 구체적인 조항 비교 관련하여 별첨-I 참조).¹⁴

개보위는 상임위원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개정 개보법 제7조의2 제1항). 장관급 상임위원인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인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은 정부에서 임명한다. 그 외의 5명은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개보법 제7조의2 제2항). 기존에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위원장이 이제는 상임위원으로서 국회에서의 의견 진술 및 보고 답변 의무,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 권한 및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 건의권을 가지게 된 것에서 격상된 개보위의 지위를 실감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의 자격을 정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주로 요구하는 것에서 이제는 집행자로서의 전문성(행정, 법 등)을 보장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개정 전후의 구체적인 조항 비교 관련하여 별첨-II 참조). 개보위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겸직금지¹⁵와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법률에 규정되면서 위원회 차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강화되었다.¹⁶ 이는 후술하듯 개보위가 단순한 심의·의결권을 넘어 집행·감독권까지 보유하게 됨으로써 독립성과 중립성의 요청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개정 전후의 구체적인 조항 비교 관련하여 별첨-III 참조).

(나) 권한 측면: 개인정보 보호 일반에 대한 조사·처분 권한으

¹⁴ 박주희, 앞의 논문, 27면

¹⁵ 2020.3.31.에 입법예고된 개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제4조의2에 겸직금지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¹⁶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본래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 차원에서 도입하여 보다 강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로의 확대

개정 개보법 하의 개보위는 기존의 심의·의결 권한에 더해 집행·감독 권한까지 보유하게 된다. 법령개선이나 정책수립·집행뿐만 아니라 조사·처분과 같은 집행·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그 동안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3개 부처에 나누어져 있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업무는 하나로 통합되어 관련조직이나 기능이 개보위로 이관될 예정이다. 가령 방송통신위원회의 현 이용자정책국 내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개인정보보호침해조사과의 기능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개보위로 이관될 예정이다.¹⁷

개정 개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보위의 새로운 집행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규제기관에 비추어보면 현장조사 등 강제적이고 침익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적법절차의 준수 등을 위한 제도 및 절차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개정 전후의 구체적인 조항 비교 관련하여 별첨-IV 참조).

3.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를 맞이한 개보위에 대한 제언

(1) 프라이버시에 대한 핵심 수권(mandate) 기관으로서의 선도와 주창 기능

프라이버시는 디지털 경제의 전 분야에 걸쳐 문제가 되고 넓게는 국민 전부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의 개보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특별규제 기관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특정 정책목표(프라이버시)의 달성을 위해 사회 전반에 개입 가능한 일반규제 기관에 더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 집행 권한이 개보위에 집중될 것임에

¹⁷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고시 등도 개보위로 승계될 예정이다(박지성, '데이터3법' 통과로 개인정보 거버넌스도 재편, 전자신문(2020.1.9.)).

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검찰, 경찰 등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국가 기관과 업무가 여전히 연관, 중첩 및 충돌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 또한 정보인권 옹호를 위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보위가 프라이버시에 관한 핵심 수권 기관으로서 정책을 선도하고 집행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보위 스스로 정책적 목표로 추구하고자 하는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립(define)하고 구체화하는 것을 최우선적이고도 항시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¹⁸ 이는 정책적 목표로서의 프라이버시가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앞서 살펴본 특성(다양성, 다면성 등)을 감안할 때 쉬운 작업이 아니며, 이를 위한 정책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경우에도 의사자/확진자 등의 경로 추적 등을 통한 감염 차단 필요성과 해당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간의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앞으로 개보위가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핵심 수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대한 보다 깊고 선행적인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⁹

¹⁸ 개보법(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 개정)의 개정이유도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¹⁹ 최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증)에 대한 대응과 그에 대한 평가가 활발하다. 역학조사와 동선공개로 통해 적절히 대응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문제 제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보위는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이다(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 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를 경계하며 2020. 3. 9. 성명서를 발표함). 이는 후술하는 주창 기능의 행사가 요청되는 문제로 판단된다.

참고로 지난 메르스 사태로 인해 2015. 7. 6.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에 근거하여 동선공개가 단행되고 있는데,

개보위는 이와 동시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신의 정책적 내용과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을 비롯한 시민 사회 전반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주창(advocacy)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 대상에는 타 정부 기관, 기업을 포함한 정보 이용자, 개인을 포함한 정보 주체 모두가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프라이버시 주창 기능은 개보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개보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의 수립에 그치지 않고 그 내용, 방법 및 고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고 설득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 수준과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는 수범자들의 법령 준수에 대한 유인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리더십도 필요하다. 개보위와 유사한 법적 지위 및 집행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개진한 사례는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 하다.

(2) ‘신생’ 집행기관으로서의 신뢰 구축(trust building)

개보위는 집행기관으로는 신생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심의·의결권한만 있었던 행정위원회에서 집행·감독권한까지 행사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면서 권한이 크게 확장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명실상부하게 개인정보 보호의 컨트롤타워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 대상 및 집행

2020. 3. 4.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여 재차 법 개정이 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개보위의 침해요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보법 제8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보위로부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의원입법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법 개정 대상으로 고려할 사항이나, 이와 별개로 개보위가 진정한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령상의 미비가 있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이러한 중대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적 논의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조직 정비 및 인력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대상 모두로부터 ‘신뢰’를 구축하는데 진력하는 것이다.

신뢰 구축의 기반은 ‘전문성’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개보위의 판단과 결정이 가장 전문적이며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프라이버시 자체가 다면복합적인 이슈인 관계로 개보위의 전문성 또한 산업, 기술, 법, 정책 및 행정 등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은 물론이고 조직 내 전문성의 함양과 축적을 위해 내부 훈련과 교육 시스템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경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제적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학 박사 출신의 인력을 포함한 경제분석과를 설치한 것과 같이, 개보위도 필요하다면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을 직접 채용하여 기술 및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내부 조직을 설치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술 분야 외에도 법률, 경제, 사회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분야의 전문인력도 보강해야 할 것이다.²⁰ 직접 채용은 예산 등의 제약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외에 외부의 전문인력(학계 포함)과 협업 및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조정원의 법경제연구그룹(LES), 학회 등과 활발히 협업하고 있음). 전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개보위의 위원의 선임을 통해서도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9명의 위원을 전부 다 프라이버시 전문가로 채워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프라이버시라는 복잡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다면적인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적절한 트레이드오프를 하면서, 예측가능하면서도 준수 가능한 실체적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안에 적용하는 한편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지 생각하고(사회·정치·경제·기술·산업·법·행정 등), 그러한 전문성이 위원회라는 조직(institution)을 통해 적절히 발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을 임명해야 할

²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현안은 인종, 성, 장애 등 소수자와 관련되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관한 전문성을 대내외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것이다. 이 때 서로 다른 배경, 출신,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구가 대변될 수 있도록 ‘다양성’도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신뢰 구축의 또 하나의 기초는 ‘독립성’이다. 이는 개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외적인 독립성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조직 내에서의 독립성도 포함된다. 조사(소추) 기능과 심의·의결(심판) 기능을 한 조직이 겸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내부 견제와 균형을 적절히 달성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조사 부서와 심판 부서를 분리하는 등 조직상의 노력 외에도 위원 등의 접촉 및 의견 진술 절차 및 회의를 통제하면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온전히 해소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신뢰 구축 수단은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의 방어권과 적법절차(due process)를 보장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으로서의 개보위는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현재도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만 이는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그 이상의 노력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 때 유념해야 하는 것은 신뢰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절차상의 예측가능성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 운용되었던 타 기관의 고시나 절차를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개보위가 염두에 두고 있는 프라이버시 목표의 달성에 적합한 절차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맞춰 개선해야 할 것이다.²¹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는 절차측면에서의 ‘혁

²¹ 집행의 우선순위, 심사 기준, 심사 절차 등에 대한 개보위의 입장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내부 준칙을 마련하는 것에 더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형태로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집행할 필요가 있다.

신'을 피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어야 하며, 개보위의 인적 구성, 조직 및 절차에 신뢰를 내재적으로 확보(trust by design)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를 권한다.²²

(3) 초기의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체제의 개편 이후에 개보위의 초기 집행 사건들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향후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과 집행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의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의 우선순위를 설정함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프라이버시 개념의 정립에 기여하면서 집행 효과가 분명하고 사회 일반의 공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사안에 행정 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동안 인력을 충원하고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프라이버시 주창 기능의 수행을 위한 분석과 연구 등을 통해 내부 역량의 강화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프라이버시 관련 현안 외에도 전문기관으로서 다른 정부 기관 또는 사회 단체가 인지하거나 제기하기 어려운 프라이버시의 사각지대나 문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험이 축적되어 가면서 집행의 범위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물론 개입이 시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규제 권한을 발동해야 할 것임 - 부득이한 “trial by fire”).

²² 아울러 언제나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공정거래법은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경제와 경쟁 보호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개정되어 왔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와 가이드라인 또한 빈번하게 변경되어 왔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와 같은 유연하고 민첩한 규제 운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초창기에는 시행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지속적인 내부 검토와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특히 실무 일선에서의 전문성은 직접적인 집행 경험을 통해 축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²³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은 집행의 실제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집행 조치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 조치가 수범자의 입장에서 이행 가능하고 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실효적인지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²⁴

III. 결론

법 개정에 의해 프라이버시 집행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개보위가 개정의 취지에 맞춰 명실상부한 프라이버시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목표로서의 프라이버시의 가치와 범위에 대해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에 맞춰 예측가능하고 절차적으로도 투명한 집행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개보위가 수행해야 할 주요 기능으로 프라이버시의 주창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적 과제로는 신뢰의 구축을, 그리고 초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을 제안했다. 아무쪼록 개보위가 위원의 선임을 포함한 조직 구성, 그리고 준입법적·준사법적 권한 행사의 쇄신을 통해 우리나라 프라이버시 거버넌스가 재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²³ 초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사한 집행 권한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경험을 청취하고 연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 하다.

²⁴ 홍콩과 싱가포르 경쟁당국들도 신생 집행기관 시절에 전문성과 경험을 쌓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점은 참고할 만 하다.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스스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된 그 밖의 선례로 미 연방대법원,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등 다양한 예가 있다.

<참고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 이용 제도 개선 필요, 보도자료 (2014. 1. 14.)
- 국가인권위원회, 제2기(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2012).
-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20. 3. 9.)
- 금준경, 방통위 밀어붙인 개인정보 평가, EU에서 되짜, 미디어오늘(2018. 11. 2.)
- 김연균, 개보위 독립기구 격상...덩치 큰 종이 호랑이 될까(2018. 10. 29.)
- 박주희,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 관한 공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2020.
- 박지성, '데이터3법' 통과로 개인정보 거버넌스도 재편, 전자신문(2020.1.9.)
- 이인호 · 유충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발전방안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 이은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3(1), 2012
- 최연진, ‘데이터 3법’ 이대로는 GDPR 적정성 심사 통과 어려워, 한국일보(2019. 11. 13.)
- 황정빈, “개보위 전문성 없다” 질타 쏟아져, ZDNet Korea(2018. 12. 1.)

별첨-1

현 개보법	개정 개보법
<p>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p>	<p>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별첨-II

현 개보법	개정 개보법
<p>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②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p>	<p>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p>	<p>제7조의3(위원장) ①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p> <p>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p>
<p>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각각 임명</p>	<p>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p>

현 개보법	개정 개보법
<p>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p>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p> <p>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 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p>
<p>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7조의4(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p>

현 개보법	개정 개보법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별첨-III

현 개보법	개정 개보법
	<p>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p>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p>
	<p>제7조의6(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p>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p>
	<p>제7조의7(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p>

현 개보법	개정 개보법
	<p>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p>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p>
	<p>제7조의1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현 개보법	개정 개보법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 (기준에는 시행령에 규정)</p>	<p>관계에 있는 경우</p> <p>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p>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p> <p>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p> <p>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p> <p>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p>

별첨-IV

현 개보법	개정 개보법
	<p>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p>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

현 개보법	개정 개보법
	<p>가에 관한 사항</p> <p>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p> <p>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p> <p>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p> <p>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p> <p>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p> <p>7.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p> <p>8. 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조의1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p> <p>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p> <p>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p> <p>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p> <p>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p> <p>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p> <p>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p>

현 개보법	개정 개보법
	<p>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p>
	<p>제7조의1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p>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p>

현 개보법	개정 개보법
	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p>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① 행정안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① 보호위

현 개보법	개정 개보법
<p>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p>	<p>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p>
<p>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p>	<p>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p>

현 개보법	개정 개보법
<p>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p> <p>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p> <p>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p> <p>④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p>	<p>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p> <p>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p> <p>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p> <p>④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p>

현 개보법	개정 개보법
<p>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p>	<p>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검사권한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호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이 해당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보호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검사권한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에게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거나, 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⑥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p> <p>⑧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p>

현 개보법	개정 개보법
	<p>만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p> <p>⑨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p>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 <p>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p>
<p>제64조(시정조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p>	<p>제64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p>

현 개보법	개정 개보법
<p>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④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p>	<p>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④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p>

현 개보법	개정 개보법
<p>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p> <p>제66조(결과의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p> <p>제66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 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 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 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 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 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 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 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p>	<p>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 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 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 용을 고발할 수 있다.</p> <p>②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 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 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 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p>

현 개보법	개정 개보법
<p>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